

국립소방병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2025. 3. .
행정안전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4년 7월 12일, 정부

나. 회부일자: 2024년 7월 15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2차 행정안전위원회(2024.11.20.)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원회부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 제2소위원회(2025.02.20.) 상정, 축조심사, 의결(수정
가결)

제2차 행정안전위원회(2025.02.25.) 상정, 소위심사보고, 찬반토론,
의결(수정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소방청장)

국립소방병원에 대한 효율적 관리 및 이사회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9명의 이사 중 5명을 당연직 이사로 두고, 당연직 이사는 소방청 차장,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 및 충청북도 행정부지사로 하려는 것임.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서기영 전문위원)

개정안은 국립소방병원 이사회의 이사를 ‘당연직 이사’와 ‘그 외의 이사’로 구분하고, 9명의 이사 중 당연직 이사로 소방청 차장,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 소속 3급 이상 공무원 및 충청북도 행정부지사 등 5명을 두려는 것임(안 제6조제3항).

현행	개정안
제6조(임원) ① (생략) ② <u>원장·이사</u> 및 감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청장이 임명한다. ③ <u>이사 중에는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거나 병원경영에 관한 전문성을 가진 외부인사 2명 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u>	제6조(임원) ① (현행과 같음) ② <u>원장</u> ----- ----- -----. ③ <u>이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당연직 이사”라 한다)과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청장이 임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당연직 이사</u>

현행	개정안
④ 원장 및 <u>이사</u>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⑥ (생략) ⑦ <u>원장·이사 및 감사</u>가 임기 중 궐위된 경우 새로 임명되는 <u>원장·이사 및 감사</u>의 임기는 새로 시작한다.	<u>외의 이사 중에는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거나 병원경영에 관한 전문성을 가진 외부인사 2명 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u> 1. <u>소방청 차장</u> 2. <u>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및 보건복지부 소속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 소속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각 1명</u> 3. <u>충청북도 행정부지사</u> ④ ----- <u>당연직 이사 외의 이사</u>----- -----. ⑤·⑥ (현행과 같음) ⑦ <u>원장, 당연직 이사 외의 이사 및 감사</u>----- ----- <u>원장, 당연직 이사 외의 이사 및 감사</u>----- -----. 부 칙 이 법은 2024년 12월 8일부터 시행한다.

현행법 제6조는 국립소방병원의 임원으로 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이사를 두도록 하고(제1항), 원장과 이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청장이 임명하되(제2항), 이사 중에는 병원경영에 관한 전문성을 가진 외부인사 2명 이상이 포함되도록 규정하고 있음(제3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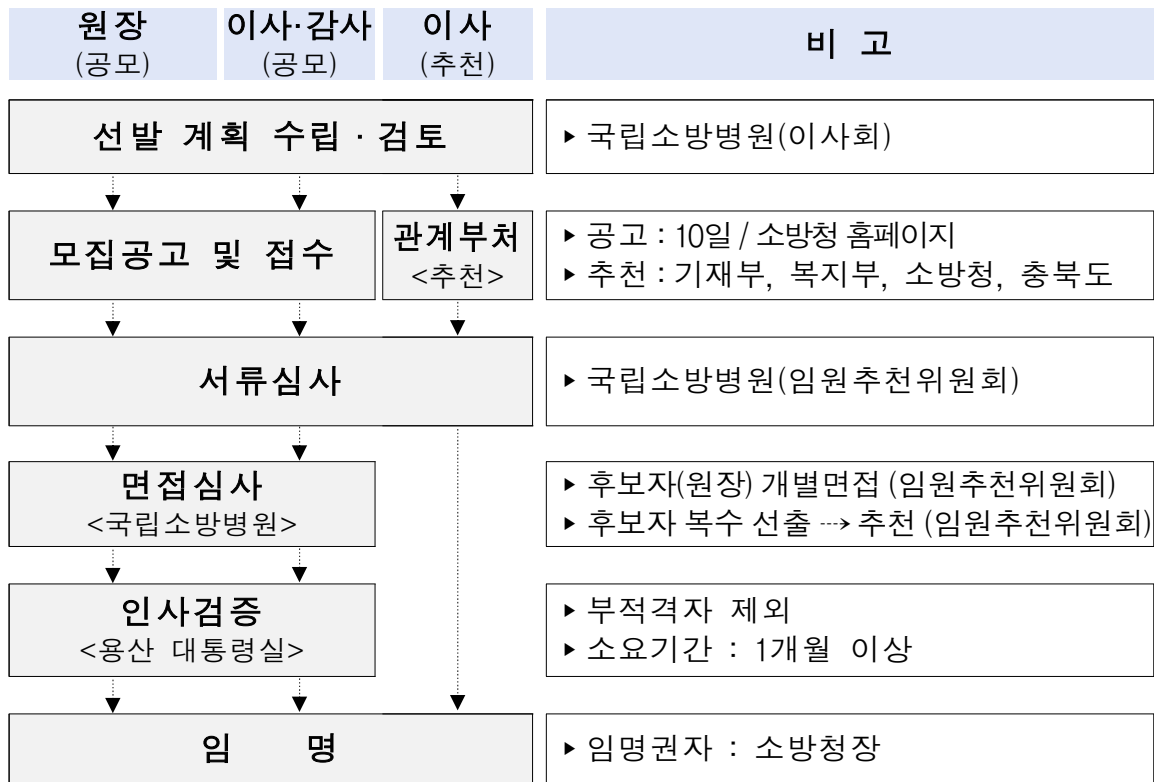
이에 따라 국립소방병원 정관은 이사의 임명·변경 요건 및 절차에 관하여 ① 이사의 임기가 만료되거나 ② 이사가 법·명령·정관을 위반하여 이사회 의사결을 거쳐 해임하는 경우에,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소방청장이 새로운 이사를 임명하도록 하고 있고,

임원추천위원회는 이사의 임명이 필요한 경우 이사회가 선임한 5인 ~ 15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병원의 비상임 이사와 「교육공무원법」에 따른 교원과 소방청 소속 공무원을 제외한 병원의 임·직원과 공무원은 임원추천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도록 하고 있음¹⁾.

1) - 「국립소방병원 정관」 제7조(임원의 임명), 제8조(임원추천위원회), 제9조(임원의 임기), 제13조(임원의 해임 등)

- 관련 규정의 내용은 [참고] 참조

<국립소방병원 임원선발 절차>



(자료: 소방청)

2024년 11월 현재 국립소방병원 이사회는 원장 1명, 이사 8명 등 총 9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²⁾,

원장을 제외한 이사 8명은 ①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거나 병원경영에 관한 전문성을 가진 사람 중에 공모를 통해 선발하여 임명한 이사(이하 “선발이사”라 함) 4명, ② 관계 부처 장

2) 「국립소방병원 정관」

제7조(임원의 임명) ① 원장은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에 의하여 소방청장이 임명한다.

② 원장을 제외한 이사는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소방청장이 임명하되, 이사 중에는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거나 병원경영에 관한 전문성을 가진 외부인사 2명 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

관의 추천을 통해 임명한 이사(이하 “정부 추천이사”라 함) 4명으로 구성되어 있음.

그런데, 정부추천 이사의 이사회 참석률이 높지 않아 국립소방병원에 대한 효율적 관리 및 이사회의 안정적 운영이 어려운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음.

이 법이 시행된 2021년 7월 이후 개최된 4차례의 정기이사회 개최 현황을 살펴보면

정부 추천 이사 중 임명 당시 공무원 신분을 가지고 있었던 이사 3명은 인사이동 등을 이유로 이사회에 한 번도 출석하지 않아 이사회의 소방병원 관리·감독·지원³⁾에 한계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임.

3) 「국립소방병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이사회) ① 소방병원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1.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2. 조직에 관한 사항

3. 사업계획 및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

4. 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사항

5. 기부금의 관리·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소방병원의 운영과 관련하여 이 법이나 정관에 이사회의 권한으로 규정된 사항

② 이사회는 원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③ 원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이사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⑥ 이사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국립소방병원 임원의 정기이사회 참석 현황>

구분	소 속(직위)	정기이사회 참석 현황			
		제1차 (‘22.12.)	제2차 (‘23.04)	제3차 (‘23.12)	제4차 (‘24.4)
원장 (1명)	서울대학교병원(교수)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선발 이사 (4명)	국립교통재활병원(병원장)	참석	참석	불참	참석
	충북대학교병원(교수)	불참	참석	참석	참석
	법무법인 00(변호사)	참석	참석	참석	참석
	대한병원행정 관리자협회 정00(회장) (현, 가천대 경영대학원 주임교수)	참석	불참	참석	참석
정부 추천 이사 (4명)	당초: 기획재정부 복지안전예산심의관 → 개발금융국장으로 전보(‘22. 2.) → 현재: 금융경제자문회의 단장(‘23. 9~)	불참	불참	불참	불참
	보건복지부(공공보건정책관)	불참	불참	불참	불참
	당초: 충청북도(행정부지사) → 대통령비서관으로 전보(‘22. 5. ~ 10.) → 퇴직(‘22. 10.)	불참	불참	불참	불참
	당초: 서울디지털대학교(소방방재학 교수) → 퇴직(‘23. 6.)	불참	참석	참석	불참
감 사 (1명)	서울대학교병원(상임감사)	참석	참석	불참	불참

(자료: 소방청)

정부 추천이사 중 임명 당시 공무원 신분을 가지고 있었던 이사의
이사회 출석이 부진한 이유에 관해서 소방청은 당초 행정적·재정적
으로 국립소방병원 업무와 관련성이 높은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을

정부 추천이사로 임명하였으나 이사회 개최일에 긴급히 처리하여야 하는 고유 업무가 발생하는 경우 이사회에 불출석할 수 밖에 없고, 전보 등으로 인하여 국립소방병원 업무와 관련성이 높지 않은 직무로 보직이 변경되는 경우에 이사회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향이 있다고 분석하고 있음.

일정 주기로 보직이 변경되는 공무원 인사의 특성을 고려할 때 공무원인 정부 추천이사의 경우 국립소방병원 업무와 연관성이 크지 않은 직무로 보직이 변경되는 상황이 반복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보이고 보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국립소방병원 이사회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향도 계속될 것으로 보이는데,

공무원인 이사가 보직이 변경될 때마다 정관에 따라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동 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이사를 개선하는 것은 시간과 비용 측면에서 비효율적일 수 있다고 보임.

개정안은 당연직 이사 제도를 도입하여 9명의 이사 중 5명을 당연직 이사로 두고, 5명의 당연직 이사는 소방청 차장, 충청북도 행정부지사 및 기획재정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이 해당 부처의 3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각각 1명씩 지명하도록 하여 당연직 이사의 임면 절차를 간소화하고 있음.

<현행 및 개정안에 따른 이사회 구성>

구분	현행	개정안
상임이사 (1명)	원장	원장
비상임이사 (8명)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소방청장이 임명 (공공보건의료 분야 전문성 보유한 외부인사 2명 이상)	당연직 이사 (5명) - 소방청 차장 -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 장관이 각각 지명하는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3명) - 충청북도 행정부지사
		당연직 이사 이외 이사(3명)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소방청장이 임명 (공공보건의료 분야 전문성 보유한 외부인사 2명 이상)
감사 (1명)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소방청장이 임명	(현행과 같음)

당연직 이사를 둘지 여부 및 당연직 이사로 누구를 둘지는 국립소방병원에 대한 효율적 관리와 이사회의 안정적 운영에 당연직 이사 제도가 기여할 지 여부, 당연직 이사의 국립소방병원 운영에서의 역할 및 다른 국립병원의 이사회 구성 등을 감안해서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으로 보임.

개정안과 같이 당연직 이사를 법률에 규정하고 그 임면절차를 간소화하는 경우, 국립소방병원 이사로 지명된 공무원이 인사이동 등의 사유로 소방병원 이사로서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에는 해당 장관이 지체 없이 당연직 이사를 변경할 수 있으므로 이사회의 안정적인 운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⁴⁾.

한편, 개정안은 당연직 이사로 소방청 차장, 충청북도 행정부지사 및 기획재정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이 각각 1명씩 지명한 해당 부처의 3급 이상 공무원을 두도록 하고 있는데, 소방청은 개정안에 따른 당연직 이사의 고유 업무와 국립소방병원 업무의 관련성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설명하고 있음.

4) 참고로 소방병원 이사회는 주된 결정이 병원 운영과 관련된 것이어서 당연직 이사(특히 공무원인 당연직 이사)의 전문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소방청은 아래와 같은 입장을 밝히고 있음.

- 소방병원의 당연직이사 5명은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 장관이 각각 지명하는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소방청 차장, 충청북도 행정부지사로 규정하고, 당연직이사는 각 부처 소속장관의 추천에 의하여 소방청장이 임명하도록 하고 있으며, 당연직이사 외의 이사 3명 중 2명 이상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거나 병원경영에 관한 전문성을 가진 사람을 포함하도록 「국립소방병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법률」 제6조 임원과, 「소방병원정관」 제7조(임원의 임명)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더욱이 「소방병원정관」은 국립소방병원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한 사람중에서 소방청장이 임명하도록 제도적으로 보완하고 있음에 따라 이사회의 공정성, 전문성 저하의 우려를 사전 차단하고 있음

<국립소방병원의 운영과 개정안에 따른 당연직 이사의 역할>

(소방청 차장) 국립소방병원은 소방공무원 임용부터 퇴직까지 공직 생애 기간 동안 유해인자 노출 및 건강이력을 관리하고 개인 맞춤형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화상·정신건강·재활(근골격계)·건강증진센터 및 소방건강연구소 등 4센터·1연구소 중심으로 특화된 주요 상병 치료와 치유 및 연구 기능을 수행하고 소방공무원의 진료와 특수근무환경에 따른 건강유해인자 분석 및 질병연구를 통한 체계적인 건강관리시스템 구축을 주요 기능으로 하고 있음에 따라 소방청 차장을 당연직 이사로 규정함.

(충청북도 행정부지사) 충청북도 음성군에 소재한 국립소방병원이 지역사회 주민을 위한 사업을 수행한다는 점⁵⁾, 소방청이 충청북도, 음성군 등과 ‘국립소방병원 투자 및 재정지원 협약’을 맺고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받는다는 점⁶⁾ 등을 고려할 때, 국립소방병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충청북도 행정부지사를 당연직 이사로 규정하였음.

(기획재정부 3급 이상 공무원) 현행법 제13조(출연 또는 보조) 제1항 국가는 소방병원의 사업과 운영에 드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국가재정을 총괄하는 기획재정부의 재정협력이 절실함

(보건복지부 3급 이상 공무원) 현행법 제5조(사업)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소방병원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응급의료사업,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보건의료사업, 소방공무원 등 및 주민에 대한 보건교육 사업을 수행함에 따라 국민건강과 보건의료를 담당하는 부처인 보건복지부의 긴밀한 협조가 필요함.

5) 「국립소방병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행정안전부 3급 이상 공무원) 소방청은 행정안전부 소속의 안전·재난 업무를 총괄하는 기관이며, 국립소방병원은 소방공무원의 주요 상병에 대한 진료 및 연구수행과 함께 지역사회 주민을 위한 일반 진료 및 공공의료 역할을 수행하므로, 효율적인 국립소방병원 운영을 위해서는 상급기관인 행정안전부와 지속적인 의견교류 및 협력 관계가 필요함

(의견: 소방청)

참고로, 유사 입법례로서 「국립대학병원설치법」의 경우에도 기획재정부장관, 교육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이 지명하는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과 병원 소재지 광역자치단체의 부시장 또는 부지사를 당연직 이사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고⁷⁾, 국립소방병원과 같이 특수법인인 서울대병원 및 서울대치과병원도 각각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제8조),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

제5조(사업) ① 소방병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5.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공공보건의료사업
8. 소방공무원등 및 주민에 대한 보건교육 사업

6) 상세 내용은 [참고 2] 참조

7) 「국립대학교병원 설치법」

제10조(임원) ① 대학병원에는 이사장 1명을 포함한 이사 11명과 감사 1명을 둔다.

② 이사장은 관련대학의 총장이 되며 이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당연직 이사”라 한다)과 이사회가 추천을 받아 교육부장관이 임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당연직 이사 외의 이사 중에는 병원 경영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인사가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1. 해당 대학병원의 장
2. 관련대학의 의과대학장
3. 관련대학의 치과병원장(해당 학교에 치과병원이 설립되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4. 기획재정부장관, 교육부장관 및 보건복지부장관이 해당 부처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 각 1명
5. 해당 대학병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부시장 또는 부지사

법」(제8조)에 따라 당연직이사를 법률에서 지정하고 있음⁸⁾.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행정부지사를 위원으로 두는 입법례로는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⁹⁾이 있음.

다만, 이사회의 의결은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루어지는데, 개정안이 입법되는 경우 재적이사 9명 중 과반수인 5명이 공무원인 당연직 이사로 구성되어 국립소방병원 운영에 필요한 전문성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고 보이고,

당연직 이사 중 충청북도 행정부지사의 경우 행정안전부 소속 국장급 공무원이므로 별도로 행정안전부의 고위공무원을 당연직 이사에 포함할 필요성이 없다고 보임.

그 밖에, 개정안 부칙은 이 개정안을 2024년 12월 8일부터 시행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현재 구성된 이사회의 이사 임기가 2024년 12월 7일에 만료된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임¹⁰⁾.

8) 관련 내용은 [참고 3] 참조

9)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6조(지역특화작목위원회)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광역시·도·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행정부시장·행정부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에 따른 농업기술원장
2.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3. 지역특화작목 관련 법인·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4. 지역특화작목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10) 현 이사회 이사의 임기: 2021. 12. 8.~2024. 12. 7.

그러나, 개정안이 2024년 12월 8일 이후에 입법되는 경우, 개정안의 시행일을 변경할 필요가 있고, 개정안 시행 당시의 이사의 임기에 관한 적용례나 경과규정을 추가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소방청은 개정안이 입법되는 경우 국립소방병원 이사회 업무의 연속성을 강화하고 소방병원에 대한 정부의 안정적 관리·감독 및 지원이 강화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임.

국립소방병원 정관

< 제2장 임원 >

제6조(임원) ① 병원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원장 1인
2. 이사 9인 이내(원장 포함)
3. 감사 1인

② 원장을 제외한 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제7조(임원의 임명) ① 원장은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에 의하여 소방청장이 임명한다.

② 원장을 제외한 이사는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소방청장이 임명하되, 이사 중에는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거나 병원경영에 관한 전문성을 가진 외부인사 2명 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감사는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소방청장이 임명한다.

제8조(임원추천위원회) ① 병원은 제6조에 따른 임원을 추천하기 위해 임원추천위원회를 둔다.

② 임원추천위원회는 이사회가 선임한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정수는 5인에서 15인 이내의 범위에서 정한다.

③ 병원의 임·직원과 공무원은 임원추천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다만, 병원의 비상임이사, 「교육공무원법」에 따른 교원과 소방청 소속 공무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9조(임원의 임기) ① 원장 및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임원이 연임되는 경우에는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

을 거치지 아니한다.

④ 임원의 임기가 만료된 경우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직무를 수행한다.

⑤ 임원이 임기 중 궐위된 경우 새로 임명되는 임원의 임기는 새로 시작하며, 임원이 궐위된 때에는 임원추천위원회가 지체없이 추천하여야 한다.

제10조(원장의 직무대행) 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호선으로 선출된 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임원의 직무) ① 원장은 병원을 대표하며 병원의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다만, 원장은 병원의 이익과 자신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병원을 대표하지 못하며, 이 경우 제10조에 따른 선출된 이사가 병원을 대표한다.

② 원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안을 심의한다.

④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고, 매년 종합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소방청장과 이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병원의 재산상황의 감사
2. 회계 및 이와 관련된 업무의 감사
3. 정관 규정사항에 대한 이행여부의 감사

⑤ 감사는 제4항 각 호에 따른 감사결과 부정하거나 불비한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이사회와 소방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제5항의 보고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를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⑦ 감사의 직무수행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한다.

제12조(임원의 자격요건 등) ① 임원의 자격요건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민 보건에 대한 식견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자
2. 병원 설립목적과 비전을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자
3. 기관경영에 대한 경륜과 지도력을 가지고 경영혁신을 적극 추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자

②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또는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병원의 임원이 될 수 없으며, 이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제13조(임원의 해임 등) ① 이사회는 원장이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이사회 의결을 거쳐 소방청장에게 해임을 건의 할 수 있다.

1.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이나 정관을 위반한 경우
2. 회계부정이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소방병원의 운영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3.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직무수행이 매우 곤란하게 되거나 불가능하게 된 경우
4.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운영평가 결과 실적이 부진한 경우

② 이사회는 이사와 감사가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소방청장에게 해임을 건의 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감당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2.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한 때

제14조(임원의 보수) ① 원장을 제외한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출석수당과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원장의 보수에 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소방청장의 승인을 받아 따로 정할 수 있다.

참고 2

국립소방병원 투자 및 재정 업무협약 결과(2022)

(자료: 소방청)

□ 행사개요

- (일시/장소) '22. 3. 3.(목) 10:30 ~ 11:00 / 충청북도청 소회의실
- (협약기관) 소방청 - 국립소방병원 - 충청북도 - 진천군 - 음성군
- (참 석) 총 19명 내외
 - 소 방 청(9) : 소방청장, 기획조정관, 충북본부장, 추진단장 등
 - 국립소방병원(1) : 국립소방병원장
 - 충 청 북 도(9) : 충북도지사, 음성군수, 진천부군수 등

□ 협약내용

- (소 방 청) 국립소방병원 건립 관련 정책·행정·재정적 지원
- (소방병원) 지역사회 주민을 위한 일반진료 및 공공의료 역할 수행
- (지 자 체) 각 인프라 조성 및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
 - 재정지원 200억원(충청북도 50억원, 진천군 40억원, 음성군 110억원)

□ 향후 계획

- 지자체 200억원 재정지원 요구 : '24년 ~ '25년(예정)

참고 3

특수법인인 병원의 이사 관련 규정

(자료: 소방청)

구분	서울대병원	서울대치과병원	국립대병원	경찰병원	소방병원
설립 형태	특수법인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특수법인 「서울대학교치과 병원설치법」	특수법인 「국립대학병원설 치법」	책임운영 기관	특수법인 「국립소방병원법」
이사 관련 규정	「서울대병원법」 제8조(임원) ① 대학병원에는 이사를장을 포함한 이사 9명과 감사 1명을 둔다. ② 이사장은 서울대학교 총장이 되며, 이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당연직 이사”라 한다)과 이사회 의 추천을 받아 교육부장관이 임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당연직 이사 외의 이사 중에는 병원 경영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인사가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서울대치과병원법」 제8조(임원) ① 치과병원에는 이사를장을 포함한 이사 9명과 감사 1명을 둔다. ② 이사장은 서울대학교 총장이 되며, 이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당연직 이사”라 한다)과 이사회 의 추천을 받아 교육부장관이 임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당연직 이사 외의 이사 중에는 병원 경영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인사가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제10조(임원) ① 대학병원에는 이사장 1명을 포함한 이사 11명과 감사 1명을 둔다. ② 이사장은 관련대학의 총장이 되며 이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당연직 이사”라 한다)과 이사회 의 추천을 받아 교육부장관이 임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당연직 이사 외의 이사 중에는 병원 경영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인사가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책임운영기관으로 법인 이사회 관련 규정 없음	제6조(임원) ① 소방병원에 임원으로서 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두고, 원장을 제외한 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② 원장·이사 및 감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청장이 임명한다.
이사 인원수	9명	9명	11명		9명

구분	서울대병원	서울대치과병원	국립대병원	경찰병원	소방병원
이 사 회 구 성	당 연 직	1.서울대학교 총장 2.교육부차관 3.보건복지부차관 4.기획재정부차관 5.서울대학교병원장 6.서울대학교의과대학장 7.서울대학교치과병원장	1. 관련대학 총장 2. 해당 대학병원의 장 3. 관련대학의 의과대학장 4. 관련대학의 치과병원장(해당 학교에 치과병원이 설립되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5~7. 기획재정부 장관, 교육부장관 및 보건복지부장관이 해당 부처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 각 1명 8. 해당 대학병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부시장 또는 부지사		-
		8~9 이사회 의 추천을 받아 교육부장관이 임명하는 사람 2명	9~11. 이사회 의 추천을 받아 교육부장관이 임명하는 사람 3명(치과병원 없는 경우 4명)		(현행) 1~9 임원 추천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소방청장이 임명하는 사람 9명

4. 대체토론의 요지

없음

5. 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조은희)

개정안은 국립소방병원 이사회의 전문성을 강화하고자 당연직 이사 수를 과반수 이하로 조정하고, 국립소방병원 정관의 정비를 위하여 이 법의 시행을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하도록 하며, 이 법의 개정의 취지를 살리고 행정에 대한 신뢰 보호를 위하여 국립소방병원 이사에 대한 적용례와 경과조치를 규정하여 수정의결함.

6. 찬반토론의 요지

없음

7. 심사결과

수정가결

8. 소수의견 요지

없음

9. 관련위원회 의견 요지

없음

10.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심사 내용

체계·자구심사를 거쳤음.

- [붙임] 1. 국립소방병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2. 국립소방병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립소방병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연월일 : 2025. 02. 25.

제 안 자 : 행정안전위원장

수정이유

국립소방병원 이사회에 소방청 차장, 기획재정부 3급 이상 공무원 등 정부관계자인 당연직 이사 5명을 두려는 개정안에 대하여는, 병원 운영을 위해 민간 전문성이 필요한 점, 유사한 국립병원에 대한 현행 입법례 등을 고려하여, 당연직 이사의 수를 전체 이사의 과반수가 되지 않도록 조정함.

수정주요내용

가. 당연직 이사에서 행정안전부의 3급 이상 공무원을 삭제함(안 제 6조제3항제2호).

나. 시행일을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하도록 함(안 부칙 제 1호).

다. 당연직 이사는 ‘직’을 중심으로 임명하고자 하는 개정안의 취지를 살리기 위하여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임명된 이사 중 소방청 차장·기획재정부·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 및 충청

북도 행정부지사는 이 법에 따라 임명된 이사로 보도록 하고, 당
연직 이사 외의 이사에게는 행정의 신뢰보호 측면에서 남은 임기
가 보장된다는 점을 명확히 함(안 부칙 제2조 및 제3조).

국립소방병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국립소방병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6조제3항제2호 중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및”을 “기획재정부 및”으로 한다.

안 부칙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당연직이사에 관한 적용례)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6조제2항에 따라 임명된 이사 중 소방청 차장·기획재정부·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 및 충청북도 행정부지사는 이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임명된 이사로 본다.

제3조(당연직 이사가 아닌 이사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6조제2항에 따라 임명된 이사 중 이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당연직 이사가 아닌 이사는 제6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임명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해당 이사의 임기는 종전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수정안조문대비표

[illegible]

	<u>정안전부 및 보</u>	-----
	<u>건복지부 소속 3</u>	-----
	<u>급 공무원 또는</u>	-----
	<u>고위 공무원 단에</u>	-----
	<u>속하는 일반직공</u>	-----
	<u>무원 중 소속 기</u>	-----
	<u>관의 장이 지명</u>	-----
	<u>하는 사람 각 1</u>	--
	<u>명</u>	
<u><신 설></u>	3. 충청북도 행정부	3. (개정안과 같음)
	<u>지사</u>	
<u>④ 원장 및 이사의</u>	<u>④ 원장 및 당연직</u>	<u>④ (개정안과 같</u>
<u>임기는 3년으로 하</u>	<u>이사 외의 이사의</u>	<u>음)</u>
<u>며, 한 차례만 연임</u>	<u>임기는 3년으로 하</u>	
<u>할 수 있다.</u>	<u>며, 한 차례만 연임</u>	
	<u>할 수 있다.</u>	
<u>⑤ · ⑥ (생 략)</u>	<u>⑤ · ⑥ (현행과</u>	<u>⑤ · ⑥ (개정안과</u>
	<u>같음)</u>	<u>같음)</u>
<u>⑦ 원장·이사 및 감</u>	<u>⑦ 원장, 당연직 이</u>	<u>⑦ (개정안과 같</u>
<u>사가 임기 중 궐위</u>	<u>사 외의 이사 및</u>	<u>음)</u>
<u>된 경우 새로 임명</u>	<u>감사가 임기 중 궐</u>	
<u>되는 원장·이사 및</u>	<u>위된 경우 새로 임</u>	
<u>감사의 임기는 새</u>	<u>명되는 원장, 당연</u>	
<u>로 시작한다.</u>	<u>직 이사 외의 이사</u>	
	<u>및 감사의 임기는</u>	
	<u>새로 시작한다.</u>	

	부 칙	부 칙
	이 법은 2024년 12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당연직이사에 관한 적용례)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6조제2항에 따라 임명된 이사 중 소방청 차장·기획재정부·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 및 충청북도 행정부지사는 이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임명된 이사로 본다. 제3조(당연직 이사가 아닌 이사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6조제2항에 따라 임명된 이사 중 이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당연직 이사가 아닌 이사는 제6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임명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해당 이사의 임기는 종전 임

		<u>기의 남은 기간으로</u> <u>한다.</u>
--	--	---------------------------------

국립소방병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립소방병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원장·이사 및”을 “원장 및”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이사의”를 “당연직 이사가 아닌 이사의”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원장·이사”를 각각 “원장, 당연직 이사가 아닌 이사”로 한다.

③ 이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당연직 이사”라 한다)과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청장이 임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당연직 이사가 아닌 이사 중에는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거나 병원경영에 관한 전문성을 가진 외부인사 2명 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소방청 차장

2. 기획재정부 및 보건복지부 소속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 소속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각 1명

3. 충청북도 행정부지사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당연직 이사에 관한 적용례)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6조제2항에 따라 임명된 이사 중 소방청 차장·기획재정부·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 및 충청북도 행정부지사는 이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임명된 당연직 이사로 본다.

제3조(당연직 이사가 아닌 이사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6조제2항에 따라 임명된 이사 중 이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당연직 이사가 아닌 이사는 제6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임명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해당 이사의 임기는 종전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임원) ① (생략)	제6조(임원) ① (현행과 같음)
② <u>원장·이사 및</u> 감사는 정관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청 장이 임명한다.	② <u>원장 및</u> ----- ----- -----.
③ <u>이사 중에는 공공보건의료 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 거나 병원경영에 관한 전문성 을 가진 외부인사 2명 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u>	③ <u>이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 하는 사람(이하 “당연직 이사” 라 한다)과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청장이 임명하 는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당 연직 이사가 아닌 이사 중에는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거나 병원경영에 관한 전문성을 가진 외부인사 2명 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u>
	1. <u>소방청 차장</u>
	2. <u>기획재정부 및 보건복지부 소속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 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 원 중 소속 기관의 장이 지명 하는 사람 각 1명</u>
	3. <u>충청북도 행정부지사</u>
④ <u>원장 및 이사의</u> 임기는 3년 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④ ----- <u>당연직 이사가 아 닌 이사의</u> -----

수 있다. ⑤ · ⑥ (생략) ⑦ <u>원장·이사</u> 및 감사가 임기 중 궐위된 경우 새로 임명되는 <u>원장·이사</u> 및 감사의 임기는 새로 시작한다.	-----. ⑤ · ⑥ (현행과 같음) ⑦ <u>원장, 당연직 이사가 아닌</u> <u>이사</u>----- ----- -- <u>원장, 당연직 이사가 아닌</u> <u>이사</u>----- -----.
--	--